

국별신용조사규정

제 정 : 1996. 2. 17
1차개정 : 1996. 7. 5
2차개정 : 1999. 3. 10
3차개정 : 2000. 2. 23
4차개정 : 2001. 9. 25
5차개정 : 2002. 2. 9
6차개정 : 2003. 9. 15
7차개정 : 2006. 8. 28
8차개정 : 2008. 8. 21
9차개정 : 2010. 1. 21
10차개정 : 2010. 7. 6
11차개정 : 2010. 11. 9
12차개정 : 2011. 11. 4
13차개정 : 2016. 12. 26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업무방법서 제11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별인수방침 및 국별신용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별인수방침, 국별신용조사에 관하여 무역보험법 및 업무방법서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별신용조사"라 함은 무역보험에서 담보하고 있는 각종 비상위험의 발생가능성을 국가별로 조사, 분석하여 국별인수방침 수립, 국별신용등급 평가 또는 심층감시국 지정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심층감시국"이라 함은 비상위험이 현존하나 수출진흥정책상 무역보험지원이 필요한 국가로서 비상위험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국가를 말한다.
3. "국별인수방침"이라 함은 국가별로 비상위험 정도에 따라 정상인수, 조건부 인수 내지는 인수중지 등의 인수태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조건부 인수"라 함은 개별심사, 건별승낙, 지급보증부 인수 등의 방법으로 제한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5. "상위 20대 수출국"이라 함은 국별인수방침 수립일 또는 국별신용등급 평가일의 최근 1년간 관세청 수출통계상 수출금액기준 상위 20위 이상의 국가를 말한다.
6. "위험분야"라 함은 조사·평가대상국의 정치·사회안정도, 대내경제안정도, 대외결제 신인도를 말한다.

제 2 장 국별신용조사

제4조(조사 대상) 국별신용조사는 국가별 위험분야를 조사 대상으로 한다.

제5조(조사 방법) ① 국별신용조사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공신력이 있는 국내외 간행물 및 관계자료에 의한 조사
2. 국외사무소, 국내외 조사기관, 정부기관 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을 통한 조사
3. 현지출장에 의한 조사
4. 기타 국별신용조사담당부서장이 인정하는 자료에 의한 조사

② 조사 대상국, 조사 실시시기 및 세부 조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조사결과의 반영) ① 국별신용조사 결과 비상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상위험의 정도에 따라 해당국에 대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한다. 다만, 수출규모 등을 감안할 때 계속적인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동 조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심층감시국 지정
2. 국별인수방침 수립
3. 국별신용등급 변경

② 국별신용조사담당부서장은 국별신용조사 결과에 따라 특정국가를 심층감시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는 병행하여 할 수 있다.

④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조치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연1회 이상 비상위험의 정도를 재조사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기 실시조치의 변경여부를 검토한다.

제 3 장 국별인수방침

제7조(국별인수방침 수립) ① 상위 20대 수출국에 관한 국별인수방침은 국별신용조사 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② 상위 20대 수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별인수방침은 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국별신용조사담당본부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별신용조사담당본부장이 국별인수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

1. 전쟁, 금융·외환위기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아 긴급히 국별인수방침을 변경하여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기 수립한 조건부 인수조치의 내용 변경

④ 인수적격·제한은행에 관한 사항은 국별신용조사담당본부장이 결정한다.

⑤ 그 밖에 국별인수방침의 수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국별신용등급 평가

제8조 (국별신용등급 평가계획의 수립 및 평가대상국 선정) ① 국별신용조사 담당부서장은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호를 고려하여 국별신용등급 평가 대상국을 선정한 후 당해연도의 국별신용등급 평가계획을 수립한다.

1. 평가대상국에 대한 수출입실적
2. 평가대상국에 대한 보험인수실적
3. 신규로 보험인수가 예상되는 국가
4. 국별정세 급변국가 또는 정세변화가 예상되는 국가
5. 기타 무역보험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별신용조사담당부서장이 평가계획 및 평가 대상국을 변경할 수 있다.

1. 주요 관심국, 정세급변국 등 국별신용등급 재평가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9조(국별신용등급 결정) ① 상위 20대 수출국의 국별신용등급은 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 협의의 협의를 거쳐 사장이 결정한다.

② 상위 20대 수출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국별신용등급은 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 협의의 협의를 거쳐 국별신용조사담당본부장이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협의회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별신용조사담당본부장이 국별신용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1. 전쟁, 금융·외환위기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긴급히 국별신용등급을 변경하여야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 신규 평가등급과 직전 평가등급의 차이가 1등급 이내인 경우

④ 그 밖에 국별신용등급 결정방법, 평가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5 장 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

제10조(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 설치) 국별인수방침의 수립 및 국별신용등급 평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별신용조사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용할 수 있다.

제11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국별신용조사 담당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아래 각호로 한다. 다만, 안전과 관련하여 필요시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부서장 또는 팀장을 추가로 포함할 수 있다.

1. 리스크관리기획담당부서장
2. 신용조사담당부서장

3. 영업기획담당부서장

4. 단기성종목, 중장기성종목인수기획담당부서장 각 1인. 단, 단기성 또는 중장기성 종목 중 한 종목에 대해서만 국별인수방침을 수립할 경우에는 해당 종목 담당부서장만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한다.

5. 국외보상담당부서장

② 협의회는 회의소집, 회의록작성, 기타 필요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국별신용조사담당파트리더로 한다.

제12조(협의사항 및 방법) 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국별인수방침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국별신용등급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협의방법은 서면 또는 회의에 의한다.

제 6 장 보 칙

제13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별신용조사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서식의 제정 및 개폐)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양식의 제정 및 개폐는 국별신용조사담당부서장이 할 수 있다

부 칙(제정)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아래와 같이 각각 이 규정 10조에 정한 국별신용등급으로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1)

①이 규정은 1996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해서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2)

- ①이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보험종목별(①해외투자보험·중장기수출보험·해외공사보험, ②기타보험종목)국별등급은 기타보험종목 기준으로 단일화되며, 국별등급 중 A급, B급, C급, D급, E급, F급은 각각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으로 G급, H급은 7등급으로 변경된다.

부 칙(3)

- ①이 규정은 2000년 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4)

- ①이 규정은 2001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5)

- ①이 규정은 2002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6)

- ①이 규정은 2003년 9월 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국별신용등급	이 규정 제10조의 국별신용등급
A급	A급
B급	B급
C ⁺ 급	C급
C급	D급
D ⁺ 급	E급
D급	F급
E ⁺ 급	G급
E급	H급

부 칙(7)

- ①이 규정은 2006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8)

- ①이 규정은 2008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9)

- ①이 규정은 2010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10)

- ①이 규정은 2010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11)

- ①이 규정은 2010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
- ②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12)

-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

부 칙(13)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7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별인수방침 수립 전결권 및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국별신용등급 평가결과 확정 관련 전결권은 제51차 개정 위임전결규정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평가된 국별신용등급은 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것으로 본다.